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89호 2018. 12. 06.(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 3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528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529호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530호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531호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532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13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사천시 고시 제2018-23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12. 6.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8 - 06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해안도로 복구공사에 따른 오탁방지막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1,600㎡(직접 : 100, 간접 : 1,500)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019년 1월 31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SPP조선(주) 대표 손성호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 사 천 시 공 보

제589호

사천시 고시 제2018-23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12. 6.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8-6호 (2018. 11. 27.)
2.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SPP조선(주) 대표 손성호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해안도로 복구공사에 따른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 승인번호 : 제2018-12호
  - 공사기간 : 2018. 11. 28. ~ 2019. 1.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18. 11. 28.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사천시 조례 제15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 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  
라 한다)” 를 “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을 “이  
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 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다”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 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 을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8조 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사천시 조례 제15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 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89호

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사천시 조례 제15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 을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89호

제2조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4조 중 “새로이” 를 “새로” 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 를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과장” 을 “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자문단운영업무담당 주사” 를 “업무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13호 중 “범위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여비”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사천시 조례 제15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졸업반)이거나 졸업한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89호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 2회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 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89호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재정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경상남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인 인턴이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89 호

사천시 조례 제15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